「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시행 2016.10.1.][법률, 2016.9.3., 개정]

□ 개 요

이 법은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하였다.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결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관한 개정》에 근거하여 1차 수정하였고, 2001년 3월 15일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결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관한 개정》에 근거하여 2차 수정하였다. 2016년 9월 3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결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개 법률에 관한 개정》에 근거하여 3차 수정하였고,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	번역문
第一条 中华人民共和国为了扩大国际经济合作和技术交流，允许外国公司、企业和其它经济组织或个人（以下简称外国合营者），按照平等互利的原则，经中国政府批准，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同中国的公司、企业或其它经济组织（以下简称中国合营者）共同举办合营企业。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회사 · 기업 ·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영자")이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중국 회사 ·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영자")과 공동으로 합영기업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第二条 中国政府依法保护外国合营者按照经中国政府批准的协议、合同、章程在合营企业的投资、应分得的利润和其它合法权益。合营企业的一切活动应遵守中华人民共和国法律、法规的规定。国家对合营企业不实行国有化和征收；在特殊情况下，根据	제2조 중국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외국합영자가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친 협의 · 계약 · 정관에 따라 합영기업에 투자하고 마땅히 분배하여야 하는 이윤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국유화와 징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특수한 상황하에서 사회 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社会公共利益的需要，对合营企业可以依照法律程序实行征收，并给予相应的补偿。	합영기업에 대하여 법정 절차에 의거하여 징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第三条	合营各方签订的合营协议、合同、章程，应报国家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以下称审查批准机关）审查批准。审查批准机关应在三个月内决定批准或不批准。合营企业经批准后，向国家工商行政管理主管部门登记，领取营业执照，开始营业。	제3조 각 합영자 간에 체결한 합영 합의 · 계약 · 정관은 국가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이하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고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마땅히 3개월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비준을 거친 후 국가 공상행정관리 주관부서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 영업을 개시한다.
第四条	合营企业的形式为有限责任公司。在合营企业的注册资本中，外国合营者的投资比例一般不低于百分之二十五。	제4조 합영기업의 형식은 유한책임공사이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 중에서 외국합영자의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이상으로 한다. 각 합영자는

	合营各方按注册资本比例分享利润和分担风险及亏损。 合营者的注册资本如果转让必须经合营各方同意。	등록자본의 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위험과 손실을 분담한다. 합영자의 등록 자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 합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第五条	合营企业各方可以现金、实物、工业产权等进行投资。 外国合营者作为投资的技术和设备，必须确实是适合我国需要的先进技术和设备。如果有意以落后的技术和设备进行欺骗，造成损失的，应赔偿损失。 中国合营者的投资可包括为合营企业经营期间提供的场地使用权。如果场地使用权未作为中国合营者投资的一部分，合营企业应向中国政府缴纳使用	제5조 합영기업의 각 합영자는 현금·현물·산업재산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외국합영자가 투자로 간주하는 기술과 설비는 반드시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선진기술과 설비이어야 한다. 만약 고의로 낙후된 기술과 설비로 기만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마땅히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중국합영자의 투자는 합영기업의 경영기간동안 제공한 토지 사용권을 포함할 수 있다. 만약 토지사용권을 중국합영자가 투자한 일부분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경우 합영기업은

	费。 上述各项投资应在合营企业的合同和章程中加以规定，其价格（场地除外）由合营各方评议商定。	마땅히 중국정부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에 서술한 각 항의 투자는 마땅히 합영기업의 계약과 정관 중에 규정되어야 하며 그 가격(토지 제외)은 각 합영자가 서로 의논하여 결정한다.
第六条	合营企业设董事会，其人数组成由合营各方协商，在合同、章程中确定，并由合营各方委派和撤换。董事长和副董事长由合营各方协商确定或由董事会选举产生。中外合营者的一方担任董事长的，由他方担任副董事长。 董事会根据平等互利的原则，决定合营企业的重大问题。 董事会的职权是按合营企业章程规定，讨论决定合营企业的一切重大问题:企	제6조 합영기업이 이사회를 설치할 경우 그 인원 수는 각 합영자가 협상하여 계약·정관에 확정하며 각 합영자가 위탁 파견하고 교체한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각 합영자가 협상하여 확정하거나 이사회가 선거하여 결정한다. 중외합영자 중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사장을 맡는 경우에는 다른쪽 당사자가 부이사장을 맡는다. 이사회는 이사회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영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직권은 합영기업 정관에

	业发展规划、生产经营活动方案、收支预算、利润分配、劳动工资计划、停业，以及总经理、副总经理、总工程师、总会计师、审计师的任命或聘请及其职权和待遇等。 正副总经理（或正副厂长）由合营各方分别担任。合营企业职工的录用、辞退、报酬、福利、劳动保护、劳动保险等事项，应当依法通过订立合同加以规定。	따라 규정하며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여 결정한다. 중대한 문제란 기업발전계획, 생산경영활동 방안, 수지예산, 이윤분배, 근로임금 계획, 휴업, 총경리 · 부총경리 · 총공정사 · 총회계사 · 감사의 임명 또는 초빙 및 그 직권과 대우 등을 포함한다. 정 · 부총경리(정 · 부공장장)은 각 합영자가 각각 맡는다. 합영기업 직공의 채용 · 사직 · 퇴직 · 보수 · 복지 · 노동보호 · 노동보험 등의 사항은 마땅히 법에 의하여 정립된 계약으로 정한다.
第七条	合营企业的职工依法建立工会组织，开展工会活动，维护职工的合法权益。 合营企业应当为本企业工会提供必要的活动条件。	제7조 합영기업의 직공은 법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펼치고 직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합영기업은 마땅히 해당 기업의 노조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第八条 合营企业获得的毛利润，按中华人民共和国税法规定缴纳合营企业所得税后，扣除合营企业章程规定的储备基金、职工奖励及福利基金、企业发展基金，净利润根据合营各方注册资本的比例进行分配。 合营企业依照国家有关税收的法律和行政法规的规定，可以享受减税、免税的优惠待遇。 外国合营者将分得的净利润用于在中国境内再投资时，可申请退还已缴纳的部分所得税。	제8조 합영기업이 획득한 총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 규정에 따라 합영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합영기업 정관이 규정하는 저축기금 · 직공장려금 및 복지기금 · 기업발전기금을 제하고 순이익은 각 합영자의 등록 자본의 비율에 근거하여 분배한다. 합영기업은 국가의 세수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세 · 면세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합영자가 분배하여 얻은 순이익을 중국 국경 내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부분 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第九条 合营企业应凭营业执照在国	제9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을

	家外汇管理机关允许经营外汇业务的银行或其它金融机构开立外汇帐户。 合营企业的有关外汇事宜，应遵照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办理。 合营企业在其经营活动中，可直接向外国银行筹措资金。 合营企业的各项保险应向中国境内的保险公司投保。	근거로 국가외환관리기관이 허가 하는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외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의 외환관련 사업은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경영활동 중 직접 외국은행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각종 보험을 중국 국경내의 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第十条	合营企业在批准的经营范围内所需的原材料、燃料等物资，按照公平、合理的原则，可以在国内市场或者在国际市场购买。 鼓励合营企业向中国境外销售产品。出口产品可由合营企业直接或与其有关	제10조 합영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재료 · 연료 등의 물질을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 또는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합영기업이 중국 국경 밖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장려한다. 수출제품은 합영기업이

的委托机构向国外市场出售，也可通过中国的外贸机构出售。合营企业产品也可在中国市场销售。 合营企业需要时可在中国境外设立分支机构。	직접 또는 관련된 위탁기구와 국외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의 대외무역기구를 통해 판매할 수도 있다. 합영기업의 제품은 또한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합영기업은 필요 시 중국 국경 밖에 분점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第十一条 外国合营者在履行法律和协议、合同规定的义务后分得的净利润，在合营企业期满或者中止时所分得的资金以及其它资金，可按合营企业合同规定的货币，按外汇管理条例汇往国外。 鼓励外国合营者将可汇出的外汇存入中国银行。	제11조 외국합영자가 법률과 협의 · 계약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한 후 분배된 순이익, 합영기업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지될 경우에는 분배된 자금 및 기타 자금은 합영기업의 계약이 규정하는 화폐와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합영자가 송금할 수 있는 외화를 중국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장려한다.

第十二条 合营企业的外籍职工的工资收入和其它正当收入，按中华人民共和国税法缴纳个人所得税后，可按外汇管理条例汇往国外。	제12조 합영기업의 외국국적 근로자의 임금수입과 기타 정당한 수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第十三条 合营企业的合营期限，按不同行业、不同情况，作不同的约定。有的行业的合营企业，应当约定合营期限；有的行业的合营企业，可以约定合营期限，也可以不约定合营期限。约定合营期限的合营企业，合营各方同意延长合营期限的，应在距合营期满六个月前向审查批准机关提出申请。审查批准机关应自接到申请之日起一个月内决定批准或不批准。	제13조 합영기업의 합영기간은 각각의 업종·상황에 따라 약정한다. 어떤 업종의 합영기업은 마땅히 합영기간을 약정하여야 한다. 어떤 기업의 합영기업은 합영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고 또한 합영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각 합영자가 합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마땅히 합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마땅히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第十四条 合营企业如发生严重亏	

损、一方不履行合同和章程规定的义务、不可抗力等，经合营各方协商同意，报请审查批准机关批准，并向国家工商行政管理主管部门登记，可终止合同。如果因违反合同而造成损失的，应由违反合同的一方承担经济责任。	제14조 합영기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어느 한쪽이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합영자의 협상과 동의를 거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으며 아울러 국가 공상행정관리 주관부서에 등기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만약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마땅히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第十五条 举办合营企业不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的，对本法第三条、第十三条、第十四条规定的审批事项，适用备案管理。国家规定的准入特别管理措施由国	제15조 합영기업의 설립은 국가가 규정하고 실시하는 시장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법의 제3조, 제13조, 제14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사항은 등록 관리를 적용한다. 국가가 규정하는 시장

务院发布或者批准发布。	진입 특별관리조치는 국무원이 반포하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반포한다.
第十六条 合营各方发生纠纷，董事会不能协商解决时，由中国仲裁机构进行调解或仲裁，也可由合营各方协议在其它仲裁机构仲裁。 合营各方没有在合同中订有仲裁条款的或者事后没有达成书面仲裁协议的，可以向人民法院起诉。	제16조 각 합영자에게 분쟁이 발생하고 이사회가 협상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국 중재기구가 조정 또는 중재하거나 각 합영자가 협의하여 기타 중재기구에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각 합영자가 계약 중에 중재 조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서면중재 협의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第十七条 本法自公布之日起生效。	제17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